

1. 개정 이유

긴급여권 발급 근거를 여권법에 마련함에 따라 긴급여권 신청 및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경감에 관한 구체 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변경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로마자성명 표기 상 일관성을 제고하고,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여권 발급을 위한 구체사항 마련

- 1) 여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규정(안 제4조제1항제7호)
- 2) 여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경감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규정(안 제4조의2)
- 3)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신설(별지 제8호서식)

나. 기타 현행 법령상 미비점 정비

- 1)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2조의2 제1항)
- 2) 여권의 발급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25세이상 병역미필자 및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전환복부중인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삭제(안 제4조제2항제2호 삭제)
- 3)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

막 날까지 받은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필요서류로 국외여행허가서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 4) 여권 수령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내보이고” 문구 삭제(안 제7조제1항)
- 5) 예외적 여권 사용등의 허가 신청 관련,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 서류 제출 절차 면제(안 제1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중 “음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로, “표기한다”를 “표기하고, 이름은 붙여 표기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의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4조제2항제1호나목 중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공익근무요원)”을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3.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 해당자 포함)은 지방 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1부.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경감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보고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 및 입원 증명서류 등
2. 기타 인도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7조제1항 본문 중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을 “직접”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상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7.6.부터 시행한다.

여 권 발 급 신 청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은색 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여 권 선택 란	※ 아래 여권 종류, 여권 기간, 여권 면수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없으면 일반여권의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48면 여권이 발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 권 종 류	☐ 일반 ☐ 관용 ☐ 외교관 ☐ 긴급 ☐ 여행증명서(☐ 왕복 ☐ 편도)	여 권 면 수	☐ 24 ☐ 48
여 권 기 간	☐ 10년 ☐ 단수(1년) ☐ 잔여기간	담당자 문의 후 선택	☐ 5년 ☐ 5년 미만

필수 기재란	※ 뒤쪽의 기재방법을 읽고 신중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 가로 3.5cm x 세로 4.5cm ·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cm~3.6cm	한글성명			
	주민번호			
	본인연락처	※ '-' 없이 숫자만 기재		
	※ 긴급연락처는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해외여행 중 사고발생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			
긴급연락처	성명	관계	전화번호	

추 가 기 재 란	※ 로마자 성명은 여권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의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고, 뒤쪽 아래의 로마자성명 기재방법을 읽고 신중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자 (대문자)	성				
	이름				
등록기준지	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선택 기 재 란	※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배우자의 로마자 성(姓)	※ 작성하는 경우 여권에 ' spouse of 배우자의 로마자 성' 의 형태로 기재되며, 대문자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여권	☐ 희망 ☐ 희망 안 함 ※ 시각장애인일 경우에만 네모 칸 안에 ' V ' 자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배송 서비스	(상세주소 기재)				
여권 문자알림 서비스	☐ 동의 ☐ 동의 안 함 ※ 동의하는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근거하여 고유 식별정보가 통신사에 제공되며, 국내 휴대전화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자 및 발급진행상황 등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1. 뒤쪽의 유의사항 확인하고 위의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 「여권법」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외 교 부 장 관 귀 하	신청인(여권명의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여권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여권명의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①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③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④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전산정보자료, 장애인증명서

접수 담당자 기재란			
접수번호			
특이사항			
심 사 란	접 수 자	심 사 자	발 급 자

210mm×297mm[백상지 120g/㎡]

유의사항

- 이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여권명의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는 기계로 읽혀지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번호는 바뀝니다.
- 사진은 여권 사진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여권용 사진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긴급연락처는 해외에서 사고 발생 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로마자 성명 기재방법은 아래 별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지는 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및 발급진행상황 알림 서비스는 국내 휴대전화만 가능합니다.
-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병역관계 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출입국정보, 장애인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수여권으로는 발급지 기준 1회만 출·입국할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로는 표기된 국가만 여행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5년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국내 기준)입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여권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신분증이므로 이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가 된 여권은 되찾았다 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로마자성명 기재 유의사항

- 여권상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는 성명으로서, 여권법령에 따라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여권상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름의 음절 사이에는 불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권상 로마자성명은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표기되며[배우자 성(姓) 표기 및 로마자이름 띄어쓰기 포함],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미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 중인 가족(예:아버지)의 로마자 성(姓)과 일치시킴을 권장합니다.

처리절차

접 수	➔	심 사	➔	발 급	➔	여권 교부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성명	
생년월일	
여행목적	※ 해당사항에 ☒ 표시 하십시오. ☐ 친족 사망/위독 ☐ 사건사고 ☐ 출장 ☐ 여행 ☐ 기타
발급사유	※ 해당사항에 ☒ 표시 하십시오. ☐ 유효기간만료 ☐ 유효기간부족 ☐ 분실·도난 ☐ 여권 미소지 ☐ 훼손 ☐ 신규 ☐ 행정착오 ☐ 기타
여행국	
여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긴급한 사유 (상세기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하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어권법 제24조(벌칙) : 동 법 제16조 제1호를 위반하여 어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청인(또는 대리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외교부장관 귀하

처 리 절 차					
작 성	➔	접 수	➔	처 리	➔ 발 급

210mm × 297mm [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등) ①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2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등) ①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 표기하고, 이름은 붙여 표기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① 영 제5조제1항 제3호(영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4호(영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14조제4호 및 영 제18조제4호에서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부	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① ----- ----- ----- ----- ----- -----

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6. (생략) <신설> ② 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남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사본 또는 읍·면·동의 장이 발행하는 병적증명서류 등 1부 가. (생략) 나. <u>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u> 다.·라. (생략) 마. <u>25세 미만의 병역을 마치</u>	----- -----. 1. ~ 6. (현행과 같음) 7. <u>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의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u> ② ----- ----- ----- -----. 1.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u>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사회복무요원 -----</u> ----- 다.·라. (현행과 같음) 마. <u>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u>	<u>지 아니한 사람. 다만,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나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u>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u>국외여행허가서 1부. 다만, 현역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전환복무 중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국외여행 승인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 승인에 관한 서류 1부로 하되, 전역·의무복무 만료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은 전역·의무복무 만료처분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전역·의무복무 만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 1부로 한다.</u> <신설>	<u>람(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u> <삭제> 3.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u>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u>
--	--	--	--

